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5일 13시 28분



목차

목차	2
등록현황	3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3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2014.04.17 조회수 540 등록자 박종일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13-007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공표일	누락규제
존속기한	2001-10-13
규제시행/폐지일	2001-10-13
규제내용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다·라·바·사·아·자목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나·다·카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라·바·사·자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마·아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6. 11. 21)

목록

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074

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078

Yeosu Web Contents

